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 계 · 주의 요구

제 목 ○○천 교량 특허공법 업체 선정 및 평가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

징 계 대 상 자 울산광역시 ○○ ○○○ 지방○○○○○○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울산광역시 ○○○ ○○○과 지방○○○○○ ○○○
(전 ○○○과)

내 용

지방○○○○ ○○○은 2016. 1. 13.부터 2018. 1. 11까지, 지방○○○○보
○○○은 2016. 7. 14.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 ○○○에서 지방하천정비
사업과 관련된 ○○천 내 태풍 차바 재해복구 사업 실무담당 및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울산광역시 ○○에서는 ○○천 일원 태풍 ○○ 피해 복구 및 재 피해 예방
을 위해 국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장내 합성형 라멘교 교량 9개 거더에 대해
특허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천 일원 교량 특허공법을 시공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
허를 받은 거더 구매과정에서의 부당한 수의계약과 물품 구입 세부 평가기준 부
재 및 부적정한 평가 등으로 불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였다.

1. 특허를 받은 물품구매에 대한 부당한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사목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는 경우로써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울산광역시 ○○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합성형 라멘교 공법의 거더 특허를 보유한 업체를 조사¹⁾한 결과 19개로 조사된 바 있고 이와 유사한 특허를 보유한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요청²⁾을 하였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비슷한 기능의 특허를 보유한 업체 등 적절한 대체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합성형 거더를 구입할 때에는 구매에 필요한 일반 사양(규격, 재료, 시공방법)만을 결정한 후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정하여 일반경쟁 방식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9개 교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제안서를 제출받아 자체 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 7개 업체를 선정하여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부적정한 세부 평가기준 적용 및 평가 오류

위 관서에서는 9개 교량에 대해 합성형 라멘교 거더 특허공법 납품업체를 정하기 위해 [표2]와 같이 총 7개 평가항목의 세부기준을 정하였다.

[표2] ○○천 교량 거더 특허공법 세부 평가기준

1) 업무담당자가 2017년 4월경 인터넷 사이트 ‘○○과 사람들’에서 검색하여 조사

2) 울산광역시 ○○ ○○과-00000(2017.0.00.)호로 공문발송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비고
		단계	만점	배점	
교량형고(15%)	공법별 표준횡단 검토	T=1.0m~1.6m까지 7단계	10	형고가 10cm 두꺼워 질 때 마다 1점 감점	
총공사비(40%)	슬래브+거더+벽체+기초+말 뚝+날개벽+접속 슬래브 등을 모두 더한 전체 공사비	7억 이하~11억 천 이하까지 10단계	10	사업비가 5천만원 높아 질 때마다 1점 감점	
시공실적(20%)	최근 5년간 공사 실적비교(건)	①320~286, ②285~251, ③250~216, ④215~181, ⑤180~146, ⑥145~111, ⑦110~76, ⑧75~41, ⑨40~6, ⑩5건 이하	10	①10, ②9, ③8, ④7, ⑤6, ⑥5, ⑦4, ⑧3, ⑨2, ⑩1	
재무건전성(10%), 유지관리(5%), 경관성(5%), 위원점수(5%)		10단계 4단계 2단계 2단계	10 10 10 10	10점~1점 10점~7점 10점~9점 10점~9점	

※ 울산광역시 ○ ○ 제출자료 재구성

가. 총공사비 세부평가 시 각 교량별 기준 없이 평가

위 관서에서는 특허공법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교량별 사업비 기초금액이 [표3]과 같이 7억7천만원부터 1억2천만원까지 편차가 크고, ‘총공사비 평가’는 가중치(40%)가 높아 각 교량별 가중치를 달리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 ‘총공사비 평가’ 기준만 정하고 나머지 6개 교량에 대하여 각 교량별 ‘총공사비 평가’ 기준 없어 평가당시 임의로 만들어 적용한 결과 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나. 평가를 잘못하여 계약업체 선정 오류

위 관서에서는 ○○0교를 평가하면서 ‘총공사비 평가’는 업체의 제안 금액을 최대 10점부터 최소 1점까지 10단계로, 재무건전성 평가 또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총자산)’을 최대 10점부터 최소 1점까지 10단계로 평가하기로 계획

하였다.

따라서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는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총공사비’와 ‘자기자본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4교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총공사비 평가’와 ‘자기자본 비율 평가’를 각각 1단계 낮게 평가하여 ○○○○(주) 대해 총 4.2점을 더 높게 부여한 결과 1, 2위가 바뀔으로써 1위 (주)○○○○○가 탈락하고 2위 ○○○○○(주)가 선정되는 잘못을 범하였다.

다. 교량 형고에 대한 평가 부적정

위 세부 교량형고(평가 가중치 15%) 평가항목의 경우 거더 두께(t)가 1.0m 부터 10cm 두꺼워질 때 마다 1점씩을 감하도록 세부평가계획을 정하였다.

따라서 교량 형고를 평가할 경우 설계도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평가당시에도 설계도서 등의 증빙 없이 제안서만 확인하고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합동감사 기간에 시공업체에서 제출한 교량 형고 설계서를 확인한 결과 대안교의 경우 제안서에는 $t=1.0\text{m}$ 이나 납품된 설계도에는 $t=1.1\text{m}$ 로, ○○4교의 경우 제안서에는 $t=0.9\text{m}$ 이나 납품된 설계도에는 $t=1.0\text{m}$ 로 당초 제안서와 다르게 설계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특히 ○○○의 경우 라멘교 거더의 특허공법을 소유한 업체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직접 조사 하는 등 유사한 대체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납품 업체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교량의 사업비와 구조 등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평가를 잘못하여 대상 업체가 바뀌는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위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청장은**

[징계] 위 관련자 중 지방○○○○보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 ○○○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